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역별 관광협회 지부 설치 및 지원 근거 신설 >
■ 위성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240호)

2025.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용 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지역별 관광협회 지부 설치 및 지원 근거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2025. 7. 3.

다. 회 부 일: 2025. 7.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별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도에 지역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행령은 지역별 관광협회가 필요로 하는 경우 지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광산업이 발달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부에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어 지역 특화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지역별 관광협회의 지부 설치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되, 시·군·구의 조례로 해당 지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관광산업을 특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Ⅲ. 검토의견

1. 지역별 관광협회 지부 설치 및 지원 근거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지역별 관광협회의 시·군·구 지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광협회 또는 지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5조(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① 관광사업자는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그 분야의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45조(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① ----- ----- ----- ----- ----- ----- <u>. 이 경우 지역별 관광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에 지부를 둘 수 있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역별 <u>관광협회가</u>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u>수·구청장은</u>----- ----- ---<u>관광협회 또는 지부가</u>--- ----- ----- -----.
--	---

다. 검토사항

- 현행법은 관광사업자가 지역별·업종별로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별 관광협회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별 관광협회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를 단위로 설립하되, 지부를 설치할 수 있음.

「관광진흥법」

제41조(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설립) ① 제45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는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관광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45조(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① 관광사업자는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그 분야의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

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지역별 관광협회는 시·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협회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관광협회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별 관광협회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를 단위로 설립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2. 업종별 관광협회는 업종별로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국을 단위로 설립할 수 있다.

○ 그런데, 관광산업이 발달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관광협회 지부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시·도별 관광협회가 시·군·구에 지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해당 지역의 관광협회나 그 지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군·구 단위의 관광사업 추진 주체 육성을 확대하고 지역 특화 관광활성화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① 현행법은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설립한 지역관광협의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 특화 관광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은 현행법을 근거로도 가능하며, ② 시·군·구별 지역관광협의회와 관광협회 지부가 중복 설치되는 경우 지역 관광사업의 추진 과정에 혼선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지역관광협의회 설립) ①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⑤ 협의회는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는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지역별 관광협회의 지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에 따라 필요시 설치 가능하고, 시행령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더라도 실질적인 제도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며, 현행 법 제48조의9(지역관광협의회 설립)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하여 운영비·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임.
-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현행법에 지역관광협의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의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지역 관광협회에 대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지원 근거 신설의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77

참고**지역별 관광협회 설립 현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협회명	설립시기
서울특별시관광협회	1961.11.08
부산광역시관광협회	1963.08.01
대구광역시관광협회	1981.08.11
인천광역시관광협회	2020.12.29
광주광역시관광협회	1986.12.03
대전광역시관광협회	1989.03.30
울산광역시관광협회	1977.08.02
세종특별자치시관광협회	2013.06
경기도관광협회	1962.02.09
강원특별자치도관광협회	1962.02.26
충청북도관광협회	1977.11.24
충청남도관광협회	1962.04.13
전북특별자치도관광협회	1976.11.01
전라남도관광협회	1964.12
경상북도관광협회	1968.03.11
경상남도관광협회	1962.01.22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962.02.22